

1. 개정이유

「인삼산업 종합계획('22~'26)」에 반영된 홍삼 등급표시 방법 등의 개선 사항과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정해 흑삼 관련 신시장을 육성하는 등 인삼의 제조기준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류의 제조기준 개선(안 별표 2)

- 태극삼의 제조기준 중 물로 익히는 방식을 수증기로 익힐 수 있게 하고, 백삼 중 생건삼의 직경·무게 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절편백삼의 제조기준을 추가하고, 흑삼의 건조온도를 60℃ 이하로 설정
-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제조방법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조기준을 개선하여 인삼류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흑삼의 건조 온도 설정을 통해 유해물질(벤조피렌) 함량 저감 기대

나.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 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새롭게 설정하고, 홍삼 등 인삼류의 등급 표시의 숫자·이름 단독 표기를 허용하는 한편, 절편홍삼·태극삼·백삼·흑삼의 절단면 기준을 삭제
- 흑삼의 기준 설정을 통해 흑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삼류의 등급 표시 개선을 통해 수출국 시장에서의 인식 개선(3등급의 품질 저하 오해)을 유도하는 한편, 절편 인삼류의 절단면 기준을 삭제하여

인삼류 제조과정의 감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유도

다. 인삼류 검사합격품 확인검사 시 불합격품의 수거·폐기 범위 확대(안 제23조)

- 불합격품의 수거·폐기의 범위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에서 벤조피렌, 중금속 등의 검사기준 초과로 확대
- 중금속, 벤조피렌 검출 시 타 행정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농관원에서 직접 조치토록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수거·폐기를 통한 인삼류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라.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4)

- 중금속,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검사기준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1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변경
-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준을 강화하여 자체검사업체의 인삼류 검사합격품 품질관리 제고

마.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추천방식 규정의 명확화(안 제28조)

-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추천방식을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수요자의 혼란 방지

바. 인삼 경작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 인삼경작 신고내용을 인삼의무자조금단체에 송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 삽입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정보를 자조금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인삼산업법」 상에서도 규정하여 법 간 조화를 이루고, '22년 인삼경작신고의무제 도입에 따라 조합 등을 통한 신고사항을 인삼 의무자조금단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외”를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한다.

1. 수거·폐기 : 별표 3의2에 따른 검사기준 중 벤조피렌, 중금속 기준 및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제28조제4항 전단 중 “추천”을 “추천(공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나)2 가)제2항 중 “물로”를 “물 또는 수증기로”로 하고, 같은 (2) (다)2 다)제1항 중 “유사하나 몸통의 직경이 10mm 미만이며 개체당 무게가 6g 미만인”을 “유사한”으로 하며, 같은 2) 라)제2항 중 “절단한”을 “절단한거나, 수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건조한”으로 하고, 같은 (2) (라)2 가)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조하는 온도는 60℃ 이하로 하여 일정시간 건조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1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2)가)(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진세노사이드 함량

가) 흑삼을 제외한 인삼류 : Rg1 0.10% 이상, Rb1 0.20% 이상
일 것

나) 흑삼 : Rg3 0.10% 이상, Rk1 및 Rg5의 합계로서 0.20% 이상일 것

※ 비고 : 등급을 포장에 표시할 때 1등·2등·3등으로만 표시하거나, 천삼·지삼·양삼으로만 표시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하 태극삼·백삼·흑삼의 포장 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홍삼류(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구분 항목	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①외관 및 성상	뇌두, 동체 다리, 섹택, 표피조직이 천, 지, 양삼에 미달되는 것으로 내백이 동체의 1/2 이하이며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내공·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백피·균열과 절단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③절단 두께 (mm)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④수분 (%)	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2)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태극삼류(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

구분 항목	절삼태극삼	절편 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
①외관 및 성상	1, 2등에 미달되는 것으로 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③절단 두께 (mm)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④수분 (%)	15.0 이하				

별표 3의2 제2호나목2)다)(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 백삼류(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

구분 항목	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
①외관 및 성상	1, 2등에 미달되는 것으로 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③절단 두께(mm)	해당 없음	5 이하	해당 없음		
④수분 (%)	15.0 이하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타 흑삼류(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

구분 항목	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
①외관 및 성상	뇌두, 동체, 다리, 색택, 표피조직이 천, 지, 양삼에 미달되는 것으로 내백이 동체의 1/2 이하이며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내공·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백피·균열과 절단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m)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0mesh(864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m)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③절단 두께 (mm)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④수분 (%)	15.0 이하				

※ 비고: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1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류의 제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인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의 기준·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삼경작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고인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만 기재합니다.		

[illegible]총 식재면적 m^2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이
의
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2. 지적도(배재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	---	---------------

동의서

1. 인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조사·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위하여 위의 신고내용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을 위해 위의 신고내용을 인삼의무자조금 단체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 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 · 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 <u>준을 초과한 때</u>	1. 수거·폐기 : 별표 3의2에 따 <u>른 검사기준 중 벤조피렌, 중</u> <u>금속 기준 및 농약잔류허용기</u> <u>준을 초과한 때</u>
2. 재검사 : <u>농약잔류허용기준외</u> 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로 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때	2. ----- <u>제1호에서 규정한 사</u> <u>항 외</u>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①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u>추천</u> 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④----- <u>추천</u> <u>(공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u>별도로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u> <u>추천하는 것을 말한다)</u> ----- ----- -----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이 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 ----- -----. ----- ----- ----- --.
--	---